

인천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단120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1. 12.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의 취소에 의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억 8,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2020. 11.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임대차보증금 2억 1,4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이 전입해 있었음에도, 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 무효로 되었다.

따라서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향후 원고와 피고뿐만 아니라 임차인과의 분쟁 등 장래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함에 있어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김병국